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1. 1. 12 선고 2020가단4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전 문

원고(선정 당사자) A

피 고 B

소송대리인 C

변론 종결 2020. 11. 17

판결선 고 2021. 1. 12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1, 2, 3, 4번 기재 토지에 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D에게 별지 1~4번 기재 부동산 중 3분의 1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이하 '원고'라 한다)와 선정자들에게 별지 5번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등기계 2001. 3. 23. 접수 제6306호로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별지 6번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등기계 1993. 9.
11. 접수 제18801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는 원고 E에게 별지 6번 기재 토지 지상 경량철골조 샌드위치판넬 지붕 1층 농가용주택 73.44㎡ 일반건축물대장의 피고 명의 소유자등록의말소등등록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별지 1~4번 토지에 관한 청구

원고는 별지 1~4번 기재 토지의 피고 지분 중 3분의 1지분은 D이 피고에게 명의신 탁한 것이므로, 피고는 D에게 위 각 토지 중 3분의 1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 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나 선정자들이 D의 위 각 토지에 관한 권리관계에 관하여 소송을 수행할 권한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다.

2. 별지 5번 기재 토지에 관한 청구

원고는 별지 5번 기재 토지는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소유였는데, 피고가 망인 의 인감도장을 부정사용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2001. 3. 2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 로, 위 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 가 망인의 인감도장을 권한 없이 사용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피고는 위 토지의 현재 소유자가 G이므로 피고를 상대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 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등기는 2001. 3.23. 경료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고,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은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해야 한다(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39225판결 참조).

3. 별지 6번 기재 토지 및 지상 건물에 관한 청구

가. 별지 6번 기재 토지

원고는 별지 6번 기재 토지는 망인이 H로부터 매수한 것인데, 피고가 허위의 확인서 를 받아

부동산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 법 에 의 하여 소유권보존등기 를 하였으므로, 위 등 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가 허위작 성된 확인서를 이용하여 위 법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 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피고는 위 토지의 현재 소유자가 G이므로 피고를 상대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 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등기는 1993. 9.11. 경료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이고,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은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해야 한다(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39225판결 참조).

나. 별지 6번 기재 토지 지상 건물원고는 별지 6번 기재 토지 지상 건물은 선정자 E이 신축한 건물인데 피고가 자신 이 신축한 건물인 것처럼 건축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록하였으므로, 위 등록은 말소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건물을 E이 신축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판사 허윤범

별지